|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경시의 행정심사비준 및 진입특별**  **관리조치 일시적 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발[2015]60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및 직속기구:  국무원은 <북경시의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범사업 총체적방안에 대한 국무원의 회답>(국함[2015]81호)에 근거하여 2015년 10월 15일부터 2018년 5월 5일까지 북경시에서 다음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비준한 부문규장에 규정한 행정심사비준 및 진입특별관리조치를 일시적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제11조, <외국인의 민용항공업 투자규정> 제6조에 규정한 관련 행정심사비준, 지분비율 제한 등 진입특별관리조치(첨부 참조)를 일시적 조정한다. 북경시에서 조건을 충족시키는 중외합작여행사를 설립하여 중국 내륙지역 거주민의 해외관광 업무 및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 관광 업무를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무원 관련부서, 북경시인민정부는 상기 조정사항에 근거하여 본 부서와 본 시에서 제정한 규장 및 규범성문건을 조정하고 시범사업과 어울리는 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북경시의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범사업 추진기간이 만료되면 국무원은 그 실시상황에 근거하여 이 결정의 내용을 조정한다.  첨부: 국무원이 북경시에서 일시적 조정하기로 결정한 관련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비준한 부문규장에 규정한 행정심사비준 및 진입특별관리조치 목록  　국무원  　2015년 10월 15일  첨부 : 국무원이 북경시에서 일시적 조정하기로 결정한 관련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비준한 부문규장에 규정한 행정심사비준 및 진입특별관리조치 목록   |  |  |  | | --- | --- | --- | | **순번** |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비준한 부문규장의 관련 규정** | **조정실시 상황** | | 1 |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제11조: 외국투자자는 중국투자자와 공동으로 법에 따라 중외합자경영·중외합작경영의 공연중개기구, 공연장소경영업체를 설립할 수 있으나 중외합자경영·중외합작경영·외자경영의 문화예술공연단체를 설립하거나 외자경영의 공연중개기구, 공연장소경영업체를 설립해서는 아니된다.  중외합자경영의 공연중개기구, 공연장소경영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중국측 투자자의 투자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하고; 중외합작경영의 공연중개기구, 공연장소경영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중국측 투자자가 경영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중외합자경영·중외합작경영의 공연중개기구, 공연장소경영업체 설립 신청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문화주관부서를 거쳐 국무원 문화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내에 심사의견을 국무원 문화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문화주관부서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가 심사의견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하기로 결정한 경우 영업성 공연 허가증을 발급하며,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영업성 공연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 문화오락업이 집중된 특정구역내에서 외국인단독투자의 공연중개기구를 설립하여 북경시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 | 2 | <외국인의 민용항공업 투자규정>  제6조 제4항: 외국인투자의 항공기 정비(국제 정비시장 오더 수주 의무 부담) 및 항공연료 프로젝는 중국 투자자가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하며; 화물운송·저장, 지면서비스, 항공식품, 주차장 등 프로젝트의 외국투자자 지분비율은 투자자들이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 중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 항공기 정비 프로젝트의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제를 취소한다. | |  | **国务院**  **关于在北京市暂时调整有关行政审批和准入特别管理措施的决定**  国发〔2015〕60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根据《国务院关于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总体方案的批复》（国函〔2015〕81号），国务院决定，即日起至2018年5月5日，在北京市暂时调整下列行政法规和经国务院批准的部门规章规定的行政审批和准入特别管理措施：  　　暂时调整《营业性演出管理条例》第十一条、《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第六条规定的有关行政审批、股比限制等准入特别管理措施（目录附后）。允许在北京市设立符合条件的中外合资旅行社经营中国内地居民出国旅游业务以及赴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旅游业务。  　　国务院有关部门、北京市人民政府要根据上述调整，及时对本部门、本市制定的规章和规范性文件作相应调整，建立与试点工作相适应的管理制度。  　　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期满，国务院将根据实施情况对本决定的内容进行调整。  　　附件：国务院决定在北京市暂时调整有关行政法规和经国务院批准的部门规章规定的行政审批和准入特别管理措施目录  国务院  2015年10月15日  附件: 国务院决定在北京市暂时调整有关行政法规和经国务院批准的部门规章规定的行政审批和准入特别管理措施目录   |  |  |  | | --- | --- | --- | | **序号** | **行政法规和经国务院批准的部门规章的有关规定** | **调整实施情况** | | 1 | 《营业性演出管理条例》 第十一条：外国投资者可以与中国投资者依法设立中外合资经营、中外合作经营的演出经纪机构、演出场所经营单位；不得设立中外合资经营、中外合作经营、外资经营的文艺表演团体，不得设立外资经营的演出经纪机构、演出场所经营单位。 设立中外合资经营的演出经纪机构、演出场所经营单位，中国合营者的投资比例应当不低于51%；设立中外合作经营的演出经纪机构、演出场所经营单位，中国合作者应当拥有经营主导权。 设立中外合资经营、中外合作经营的演出经纪机构、演出场所经营单位，应当通过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向国务院文化主管部门提出申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20日内出具审查意见报国务院文化主管部门审批。国务院文化主管部门应当自收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的审查意见之日起20日内作出决定。批准的，颁发营业性演出许可证；不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申请人应当在取得营业性演出许可证后，依照有关外商投资的法律、法规的规定办理审批手续。 | 选择文化娱乐业聚集的特定区域，允许设立外商独资演出经纪机构，在北京市市域范围内提供服务。 | | 2 |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第六条第四款：外商投资飞机维修（有承揽国际维修市场业务的义务）和航空油料项目，由中方控股；货运仓储、地面服务、航空食品、停车场等项目，外商投资比例由中外双方商定。 | 取消外商投资飞机维修项目中方控股的限制。 | |